

허가 또는 신고번호	<b>소음·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</b>					처리기간					
제 호						시설변경: 5일	기타: 즉시				
신 고 인	①상호(사업장명칭)										
	②성명(대표자)					③생년월일					
	④주소					(전화번호: )					
⑤사업장 소재지					(전화번호: )						
⑥변경사유											
⑦가동개시예정일					년 월 일						
변 경 내 용	기 존 사 항					변 경 사 항					
	⑧시설 변경	시설명	용량 (마력)	수량 (대)	소음 [dB(A)]	진동 [dB(V)]	시설명	용량 (마력)	수량 (대)	소음 [dB(A)]	진동 [dB(V)]
⑨기타 변경											
<p>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고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<b>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</b></p>											
구비서류							수수료				
1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						조례에 따름				
2.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											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